

공동주택 지원신청서

(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)

신청단지	공동주택명		동 수	동
	주 소	동 번지	세 대 수	세대
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년 월 일	사용검사일	년 월 일

지 원 신 청 내 용

사 업 명	사업비(단위:천원)			사업기간	
	총 계	자체부담	지원신청	착수예정일	완료예정일
총 계					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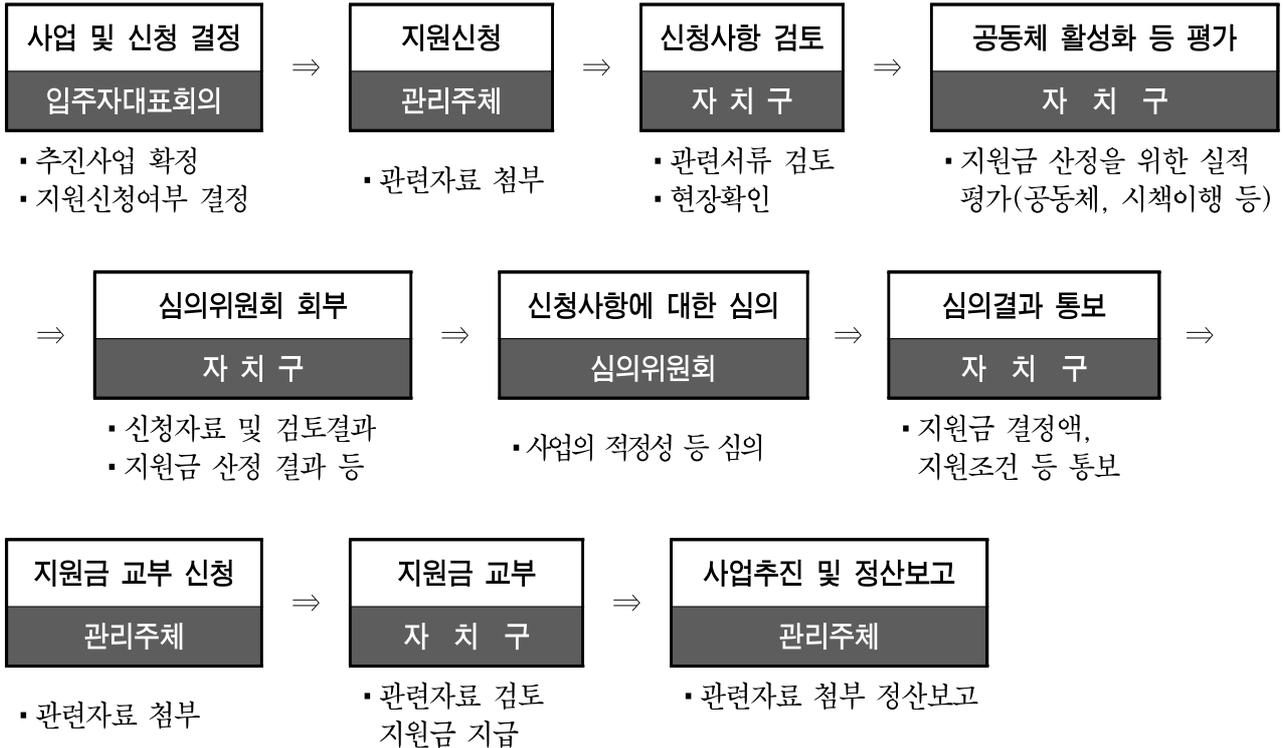
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(인)

관 리 사 무 소 소장 (인)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 :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, 사업계획서(현장사진, 도면,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), 자부담능력 입증자료,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,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□ 처리절차



지원 제외대상

- 가.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(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)
- 나.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
- 다.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
- 라. 해당 년도 1월 1일 현재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
- 마.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
- 바.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**
- 사.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아.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(단,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)